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에 따르면, 양허관세가 적용되는 시장접근물량과 관련하여 생산기반 취약 등 구조적인 요인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경우 이를 해소하고 관련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외화 획득용 원자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그 시장접근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85,787톤에서 253,749톤으로 늘리는 등 3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추가로 늘려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특기할 사항 없음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05란, 1201란, 1202란과 2008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05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10 톤	1,665 톤	1,675 톤
1105	10	0000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1105	20	0000	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120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85,787 톤	67,962 톤	253,749 톤
1201	10		종자			
1201	10	1000	콩나물용			
1201	10	9000	기타			
1201	90		기타			

1201	90	3000	콩나물용				
1201	90	9000	기타				
1202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탈각한 낙화생 기준 4,907.3 톤	탈각한 낙화생 기준 5,592.7 톤	탈각한 낙화생 기준 10,500 톤	
1202	30		종자				
1202	30	1000	꼬투리를 벗기지 않은 것				
1202	30	2000	꼬투리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	4		기타				
1202	41	0000	꼬투리를 벗기지 않은 것				
1202	42	0000	꼬투리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	1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 (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 없다)			
2008	11		땅콩			
2008	11	9000	기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